

제7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24조 (계약목적)

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(주) 아름다운교육원부설 아름다운재가센터를 이용토록 하며,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- ①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-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-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- ④급여계약체결 시 개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

제25조 (계약기간)

-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.
- ②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③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.

제26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- ①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, 계약당사자(센터주체, 서비스이용자, 서비스 보호자), 인적사항, 계약기간, 계약의 변경, 계약의 해지,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, 배상책임, 이용규정, 개인정보보호의무,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, 1부는 (주)아름다운교육원부설 아름다운재가센터가 보관한다.
- ③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급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제27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-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.
- ②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(15%)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
- ③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(6%,9%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0%).
- ④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.

[별지1]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 및 급여제공계획표 (2026년)

※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(별표 1-5)는 [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242호(2016.12.22.)] 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른 것이며,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단,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표1]장기요양등급별월한도액

장기요양 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월 한도액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[표2]방문요양서비스의급여비용 산정기준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7,450	150분 이상	50,640
60분 이상	25,320	180분 이상	57,020
90분 이상	34,120	210분 이상	63,530
120분 이상	43,430	240분 이상	70,080

[표3]방문목욕서비스의급여비용 산정기준

분 류	‘26년수가	본인부담금 일반(15%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 60분	88,990	13,349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 40분	80,230	12,035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	7,515

[표4]방문요양,간호서비스의서비스제공시각에따른 급여비용

서비스 제공시각	금액(원)
18시 이후 22시 이전	[별표2]의 소정수가에 20% 가산- 폐지(20210101)
22시 이후 06시 이전 및 일요일	[별표2]의 소정수가에 30% 가산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정한 휴일에 제공한 급여	[별표2]의 소정수가에 50% 가산

제30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
인수 권리 및 의무: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권리	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,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의무	①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 ② 서비스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할 의무가 있다. (해외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)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제31조 (계약의 해제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사망 :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
2. 질병 :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비급여 연체 :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4. 본인부담금 연체 :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‘갑’, ‘을’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
5.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: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,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/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6. 부정계약 :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/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7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
8.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
9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10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